『제2절 』

보상체계 연차보고서

1. 보상위원회

가. 총괄

나. 구성

다. 권한과 책임

라. 보상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보상위원회

가. 총괄

당사의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은 그룹의 경영성과와 리스크 구조가 조화를 이루어 장기 성과 추구를 통한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과체계를 설계·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인 보상위원회를 통해 성과평가 및 보상 정책을 상기 내용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보상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으며,『이사회규정』제9조(이사회내 위원회)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하여 2019년 1월부터 운영되어왔습니다.

위원장은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합니다.

또한,『보상위원회규정』제10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보상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당사 보상위원회 규정 제5조에 의거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사외이사를 1인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 보상체계에 리스크관리 측면이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중 1인 이상을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제고했습니다.

당사의 보상위원회는 총 5인(정찬형, 노성태, 박상용, 장동우, 김홍태)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4인(정찬형, 노성태, 박상용, 장동우)의 위원이 사외이사이고, 1명이 비상임이사(김홍태)이며, 사외이사인 정찬형 이사가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어, 보상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상용, 김홍태 이사는 현재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보상관련 재무적 내용 및 회사의 리스크관리측면이 심도 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정찬형 위원은 금융분야, 노성태 위원은 경제분야, 박상용 위원은 경영분야, 장동우 위원은 회계분야 전문가로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했습니다.

아울러 2021년 8월 31일 이전까지는 전지평 이사(사외이사)가, 2021년 9월 16일 이전까지는 첨문악 이사(사외이사)가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여부	약력
정찬형	사외이사	사외이사	有	포스코기술투자 사장
노성태	사외이사	사외이사	有	한화생명 경제연구원장
박상용	사외이사	사외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有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장동우	사외이사	사외이사	有	아이엠엠 인베스트먼트(주) 대표
김홍태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有	예금보험공사 기획조정부 부장
첨문악	사외이사	사외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有	중국 푸본은행 부회장
전지평	사외이사	사외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有	북경 FUPU DAOHE 투자관리유한공사 부총경리

2) 구성원

【2021.3월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정찬형	사외이사	위원장	2020.3.25	2020년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노성태	사외이사	위원		
박상용	사외이사	위원		
장동우	사외이사	위원		
첨문악	사외이사	위원		
전지평	사외이사	위원		
김홍태	비상임이사	위원		

【2021.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정찬형	사외이사	위원장	2021.3.26	2021년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노성태	사외이사	위원		
박상용	사외이사	위원		
장동우	사외이사	위원		
김홍태	비상임이사	위원		
첨문악	사외이사	위원		2021.9.16. 사임
전지평	사외이사	위원		2021.8.31. 사임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보상위원회규정』에 의거하여 당사 보상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임원을 포함한 경영진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외부인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성과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보상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상위원회는 2021년 2월 5일 개최된 제1차 보상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결의하였습니다.

임원을 포함한 경영진(이하 경영진)에 대한 기본급과 성과보상을 포함한 보상을 결정하고 보상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보상 및 지급방식은 아래 보상의 세부정보와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은 개인별 산정금액에 따라 매달 나누어 지급하며, 성과급은 연봉 기준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운용하여, 평가 기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과급은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나누어 단기성과급은 2021년 평가결과에 따라 2022년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장기성과급은 장기간 평가결과에 따라 만 3년이 경과 하는 2025년에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3) 보상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상위원회는 2021년 3월 5일 개최된 제2차 보상위원회에서 보수지급에 관한 '보상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보상체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은행연합회에서 정한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보상체계 연차보고서'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당사 및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되, 최근 사업연도 성과보상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공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의결하는 보상위원회가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습니다.

4) 보상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상위원회는 2021년 3월 5일 개최된 제2차 보상위원회에서 보상체계의 설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경영진 성과평가지표와 보상기준 관련 논의를 통해 사내이사의 재무 및 비재무 부문의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책임자 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상기준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단, 리스크관리책임자의 경우,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자본적정성, 리스크반영 수익성, 건전성 부문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또한 경영진의 장기성과지표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설정하여 장기성과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 보상위원회는 2021년 3월 5일 개최된 제2차 보상위원회에서 보상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연차보상평가 결의를 통하여 당사의 보상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 보상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상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는 동 보상체계연차보고서 '1.보상위원회-라.보상위원회 활동 내역 및 평가-(1)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중 보상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6) 금융회사의 보상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당사 보상위원회는 2021년 3월 5일 개최된 제2차 보상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의 보상체계가 당사의 손익규모 및 자본 등과 같은 재무상황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며, 위험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5일 개최된 제1차 보상위원회에서 임원 성과평가지표 결의시 보통주자본비율, RAROC, 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의 지표가 반영되어 당사의 보상체계가 재무상황 및 위험과 적절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년간 장기성과평가 후 장기성과급 지급 시 만 3년 이상의 이연기간을 적용하여 경영진이 과도하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성과보수의 원칙, 이연지급과 같은 보상체계 관련 법규 전반에 관해 내규 및 운용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7) 금융회사의 보상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상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당사는 2021년 3월 5일 개최된 제2차 보상위원회에서 연차보상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동 평가에서 당사의 보상정책 및 운영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보상위원회의 구성, 보상 제도의 설계 및 운영, 성과평가기준의 구성, 보상기준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8) 보상위원회 보상정책의 적용 범위

① 국내 :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적용
② 해외 : 해당 사항 없음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당사는『보상위원회규정』제 7조에 보상위원회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임원 등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1년 2월 5일 개최된 제1차 보상위원회에서 변동보상의 대상자를 경영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경영진은 대표이사 회장, 수석부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 임원을 범주로 하였습니다.

해당 범주에 따라 2021년 12월 말 기준 임원은 대표이사 회장 1명, 수석부사장 1명, 부사장 6명, 전무 4명, 상무 1명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	인원수 (2021.12.31.)	직명
경영진	13명	회장, 수석부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명	해당 사항 없음

라. 보상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보상위원회는 위원장(현재 정찬형 이사)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021년도 결의사항 중 별도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2) 활동내역 개요

2021년에는 총 4회의 보상위원회가 소집되었고, 보상위원의 평균 참석률은 96%입니다. 평균 참석률 90% 이상을 유지하여 실질적인 보상위원회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3)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21년도 1차 보상위원회 : 2021년 2월 5일 (13:30 ~ 14:00)

〔안건 통지일 : 2021.01.2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정찬형	노성태	박상용	전지평	장동우	김홍태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1] (2021년 지주사 성과평가기준 및 보상기준(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2] (2021년 자회사 성과평가기준(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경영진에 적용할 2021년도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기 위함
2) 자회사에 적용할 2021년도 성과평가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기 위함

나. 제2021년도 2차 보상위원회 : 2021년 3월 5일 (09:20 ~ 09:40)

〔안건 통지일 : 2021.02.2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정찬형	노성태	박상용	첨문악	전지평	장동우	김홍태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1] (2020년 연차보상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나. 2호안건[2] (보상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1) 당사의 보상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을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하기 위함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준수를 위해 보상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내용을 확정하고 공시하기 위함

다. 제2021년도 3차 보상위원회 : 2021년 3월 26일 (11:35 ~ 11:37)

〔안건 통지일 : 2021년 3월 18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정찬형	노성태	박상용	첨문악	전지평	장동우	김홍태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1]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순위 결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보상위원회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정하기 위함

라. 제2021년도 4차 보상위원회 : 2021년 4월 23일 (10:00 ~ 10:30)

〔안건 통지일 : 2021년 4월 15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정찬형	노성태	박상용	첨문악	전지평	장동우	김홍태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1] (2020년 지주사 성과평가 및 보상(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2] (2020년 자회사 경영실적평가(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2020년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및 보상(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기 위함
2) 2020년 자회사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함

4) 평가

당사는 보상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상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임시이사회(2019.12.20.)에서 평가방법을 수립·결의하였으며, 2020년부터 정기적으로 보상위원회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 운영실적 평가 세부 점검항목에는 보상위원회 구성(전문성), 보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합리적인 경영진 보상체계 수립 등), 보상위원회의 운영(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 개최 여부, 규정 마련 및 규정에 따른 운영 등), 보상위원회와 경영진 간 의사소통 등이 포함되며, 평가결과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위원회 운영', '위원회와 경영진 간 의사소통' 등 모든 항목에서 전체적으로 높은 평가와 더불어 보상위원회가 그룹가치 제고 및 업무 운영 개선을 위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적정하게 수행중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운영실적 평가는 보상위원회 위원들의 평가와 동 결과를 취합 후 전체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 보상체계

가. 주요사항

나. 보상 세부사항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보상 세부사항

2. 보상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상의 연계방식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당사는 수익성 및 건정성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지표로는 수익성 지표 (ROE, ROA, RAROC 등), 건전성 지표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본적정성 지표 (보통주자본비율 등), 생산성 지표 (C/I Ratio 등) 등을 주요 성과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룹의 주요 경영관리 부문을 평가하기 위한 경영과제(그룹 성장기반 확대, Digital No.1 도약, 경영 효율성 제고, 브랜드/ESG경영 강화, 리스크/내부통제 강화, Global 사업선도 등)를 비재무 지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CEO 및 경영진은 그룹 전체 재무성과 지표 및 담당업무별 고유 업무를 반영한 경영과제 등 비재무 지표를 평가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업무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담당임원, 리스크담당임원, 준법감시인의 경우에는 재무 성과와 무관한 지표로 성과지표를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 리스크담당임원의 경우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자본적정성, 리스크반영 수익성, 건전성 부문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재무 성과지표	비재무 성과지표
단기 성과평가 지표 : ROE, ROA, RAROC, 보통주자본비율, C/I Ratio, 고정이하여신비율 장기 성과평가 지표 : 상대적주주수익률, ROE, 당기순이익, C/I Ratio, 고정이하여신비율	그룹 성장기반 확대 Digital No.1 도약 경영효율성 제고 브랜드/ESG경영 강화 리스크/내부통제 강화 Global 사업 선도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상의 연계방법

경영진은 그룹사 재무성과 평가결과와 개인별 성과측정 지표로서 해당 임원의 전략과제 등

비재무성과 평가결과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성과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2) 성과보상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상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직급별 직무의 특성 및 업무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총보상(기본급,성과급) 중 변동보상(성과급) 비율을 확대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변동보상액 중 당해 연도 성과 측정 결과에 따라 산정된 변동보상의 38% ~ 57%는 즉시 지급하나, 43% ~ 62%는 당해 연도 성과가 당해 연도 이후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별도평가를 통하여 3년간 이연 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경영진				
	대표이사	수석부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변동보상(성과급)비율	68%	60%	60%	60%	58%
이연비율	62%	47%	47%	47%	43%
이연기간	당해연도 제외 만3년				

나) 이연된 보상액 또는 지급된 보상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CEO 및 경영진은 성과평가 점수와 성과보상이 연계되어 있어 성과 미달 시 평가점수 하락으로 인해 성과보상이 축소됩니다. 또한 재무실적 조정이나 징계 수위에 따라 성과보상을 차감하는 기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 이연보상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CEO 및 경영진의 경우, 장기성과급은 당해 연도 성과를 포함하여 4개년의 장기성과 측정 결과와 이연지급 시점의 주가 등에 따라 지급액 및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상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상액 중 고정보상액과 변동보상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전체 보상액 중 고정보상액과 변동보상액의 배분기준은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고정보상액은 기본급으로, 성과평가에 따른 변동보상액은 성과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상액 중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의 강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상 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나) 성과보상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변동보상의 지급 형태는 현금보상과 현금 결제형 주식기준보상 형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 성과보상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상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경영진의 경우 성과보상액 중 40% 이상을 장기성과와 연동하기 위하여 현금 결제형 주식기준보상 형태로 보상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책임자는 성과보상액 전액을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라) 성과보상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변동보상액은 직위와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이연지급의 배분비율을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원을 포함한 경영진의 경우 성과보상액 중 38% ~ 57%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 43% ~ 62%는 장기성과와 연동하여 3년 동안 이연하고 있습니다.

4) 일반직원의 보상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상제도

당사는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소속 집단별 경영실적 결과, 개인별 성과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당사는 연공서열에 의한 직급별 호봉제 대신 연봉제를 도입하여 임금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당사는『보상위원회규정』제 9조에 의거하여 보상위원회 위원들에게 임직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6)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당사는 보상위원회의 결의 대상이 되는 경영진이 보상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상관련 보험을 활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7) 보상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당사는 2021년 2월 5일 제1차 보상위원회 결의에 의거하여 2021년 적용 경영진의 장·단기 성과지표를 결의하였습니다.

나. 보상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상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상총액(A)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임직원수(C)	임직원 평균보상 (A/C)
			비율 (A/B)		
전년도 (2020년)	234.2	27,230.5	0.86%	164	1.43
당해년도 (2021년)	276.8	20,012.5	1.38%	156	1.77

주1) 임직원보상총액(A)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 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주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그룹연결기준의 (t-1)기의 금액을 기재
[예시 : 연도가 2021년인 경우 2020년 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재]

주3) 임직원보상총액(A), 임직원수(C)는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공시기준에 따라 작성

2) 직급별 보상총액 및 성과보상액

(단위 : 억원)

구분		임원[주1,2]		직원[주1,2]			
		등기	미등기	부부장이상	차장/과장	대리급 이하	기타직원
전년도 (2020년)	보상총액	17.2	29.7	83.9	89.8	0.6	13.0
	성과보상액	3.0	8.9	15.7	14.1	0.1	1.7
해당년도 (2021년)	보상총액	19.1	37.4	103.5	97.2	1.7	17.9
	성과보상액	4.5	10.6	21.0	15.0	0.2	2.8

주1) 경영진 중 임원이 아닌 대상자 및 기타 계약인력은 기타직원에 기재

주2)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공시기준에 따라 작성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상 세부사항

1) 보상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주2)]	기본급[주3)]	성과보상액[주3)]	
					이연지급 대상
전년도 (2020년)	임원	19	39.6	32.6	15.8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해당년도 (2021년)	임원	19	41.3	45.8	24.8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주1)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 및 당사 보상위원회에서 경영진으로 결정한 직원을 포함 (이하 동일)

주2) 해당년도 중 6개월 이상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특정직원을 기준으로 기재 (이하 동일)

주3)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상'으로 분류

2) 성과보상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성과보상액				
			현금	주식[주1)]	주식연계 상품[주2)]	기타[주3)]
전년도 (2020년)	임원	32.6	19.3	-	13.3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당해년도 (2021년)	임원	45.8	25.6	-	20.2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주1) 주식 : 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 방법(예: 외부평가기관 2개 이상으로부터 평가받아 산정한 금액등)으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주2) 주식연계상품 : 상기 주1)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한다. (발생년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산정)

※ 주2) 최종 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더라도 주식관련 보상인 경우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기재

주3) 기타 :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한다.

3) 이연보상액의 보상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상액[주1)]		
			지급확정[주2)]	지급미확정[주2)]
전년도 (2020년)	임원	25.1	4.6	20.5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당해년도 (2021년)	임원	49.9	9.2	40.7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주1) 이연보상액 :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상액을 기재한다.

주2)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상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지급확정'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으로 구분 기재

주3) OOOO년 발생 성과보상액을 익년도 1/4분기중 평가하여 이연규모를 확정하는 경우 동 이연보상액을 OOOO년말 기준 누적 이연보상액에 포함(이하 동일)

4) 이연보상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상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전년도 (2020년)	임원	25.1	4.6	-	20.5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당해년도 (2021년)	임원	49.9	9.2		40.7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5) 이연보상액의 보상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상액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전년도 (2020년)	임원	25.1	15.8	9.3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당해년도 (2021년)	임원	49.9	24.8	15.8	9.3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주)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상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2021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상액을 2021년(t기) 발생분, 2020년(t-1기) 발생분, 2019년(t-2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6) 이연보상의 조정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상액 축소액[주1]	직접적 조정[주2]	간접적 조정[주3]	잠재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주4]
전년도 (2020년)	임원	-	-	-	25.1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당해년도 (2021년)	임원	-	-	-	49.9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주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상액중에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상을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상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주2) 이연보상이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3) 이연보상이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4) 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상액(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상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상액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20년)	임원	(해당 사항 없음)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당해년도 (2021년)	임원	(해당 사항 없음)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주)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상액에서 제외